

#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강 지 현\*\*

##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에서는 폭력과 절도 피해자의 경찰신고여부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이라는 이론적 틀이 한국의 범죄피해자 신고결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2009년 이후 세 차례 실시된 한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통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낮은 피해율로 인해 충분한 피해사건의 확보가 어려운 범죄피해조사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보완하는 한 방법으로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혼인여부가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기혼자인 경우에 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폭행사건에 있어서 피해의 심각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미치는 교차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모르는 사람에 의한 심한 피해는 피해자의 경찰신고 확률을 높이는 반면,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액수로 측정된 피해의 심각성과 발생장소, 피해자의 연령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액이 클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았고,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신고가능성은 기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해 신고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 주제어 : 범죄피해신고, 범죄피해조사, 신고결정요인, 폭력과 절도

\* 이 논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 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2015년 4월 24일)의 발표문을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모든 범죄사건이 경찰에 인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사건은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 가족이나 목격자의 신고, 가해자의 자수, 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이 발생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경찰에 신고되는 범죄는 전체 발생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며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식통계 그 자체의 신뢰성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노성훈, 2012: 286). 이처럼 경찰이 인지하지 않은 사건, 즉 신고되지 않은 범죄사건에 대한 관심은 공식통계가 주는 일종의 착시현상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압수범죄의 실태와 원리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균형있는 피해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갖는 차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자료의 비교분석이나 신고된 사건의 특성분석 등 다양한 관련 주제들을 다루며 발전해왔다.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사건을 인지하는 다양한 경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신고이다. 피해자의 신고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당 사건을 형사사법기관이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법과 형사사법기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 등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사건이 알려지기 힘든 범죄 유형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범죄사실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등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법기관이 인지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경찰신고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신고결정 여부 및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 Black의 법행동 이론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Kang & Lynch, 2014; Goudriaan, Lynch, & Nieuwebeerta, 2004; 노성훈, 2012; 탁종연, 2010). 우리나라에 경우, 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 및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한 편이고 실증적 선행연구도 많지 않은데, 이는 범죄율이 낮고 관련 연구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2009년부터 개편되어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가)가 거의 유일한 실증자료인데 이 또한 낮은 피해율로 인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 여부 및 신고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밝힌 피해자의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이라는 두 이론적 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낮은 범죄피해율은 단일년도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피해사례의 확보와 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가 있어 자료활용과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신고여부나 범죄피해의 영향 및 후유증 등 피해자 관련한 보다 상세한 연구문제에 범죄피해조사자료에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절도 등 발생빈도가 높은 특정 범죄유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유형별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미범죄피해조사(NCVS)를 활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Kang & Lynch, 2014). 폭행과 절도사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신체폭행 피해와 절도피해 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을 비교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부차적으로는 범죄피해조사자료의 통합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배경적 논의 및 연구 필요성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규범적 관점(normative prescription), 그리고 Black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비용-편익분석이란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과 이익을 비교계산하고 이에 따라 신고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이고 규범적 관점은 범죄피해자의 신념이나 규범, 믿음이 피해사실의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Kang & Lynch, 2014; Goudriaan, Lynch, & Nieuwbeerta, 2004).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피해액이나 신체피해의 결과가 클수록, 피해보상의 가능성이 클수록 해당 사건을 피해자가 형사사법 기관에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즉, 범죄신고를 위한 비용(신고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보복 가능성 등)보다 신고로 얻는 이익(재피해 확률 감소, 피해액의 보상 등)이 더 큰 경우에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Goudriann et al., 2004; Schnebly, 2008). 이와는 달리, 규범적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이 요구하는 규범적 맥락에 따라 피해사실 신고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규범적 관점이나 신념 등에 따른 범죄피해의 신고결정은 신고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계산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도난 피해의 경우 경찰신고에 앞서 카드사에 먼저 도난신고와 이용정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선생님이나 학교직원 등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회일반의 상식, 그리고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976년에 발표한 도널드 블랙의 범행동 이론 또한 피해사실 신고결정을 위한 이론적 틀로써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이론에서는 법을 양적으로 변화하는 함수로 이해하고 법의 사용량이 개인의 계층과 사회적 거리, 문화, 조직화, 그리고 사회통제 등에서 영향받는다(Black, 1976). 법이 자동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누군가 법을 사용 혹은 동원해야 하는 것인데, 법을 동원하는 대표적인 예가 경찰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Balck, 1976, 126; 노성훈, 2012, 288에서 재인용). 범행동 이론은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의 종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등 피해자의 범죄피해사실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Gottredson & Hindelang; Hembroff, 1987; 탁종연, 2010). 이에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고결정을 위한 선행연

구의 이론적 틀에서 법행동 이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증적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변수들에 주목하거나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을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다(Baumer & Lauritson, 2010; Kang & Lynch, 2014).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 그리고 법행동 이론 등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은 경찰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혔는데, 크게 사건관련 특성과 피해자관련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의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건관련 특성 가운데 비교적 일관되게 경찰신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피해의 심각성이다. 피해의 심각성은 신고의 비용-편익분석 측면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액이 크거나 신체피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해당사건을 신고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된다. 이는 심각한 사건의 경우 신고로 인한 편익, 즉 피해보상 등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범죄유형에 따라 신체피해의 정도 또는 피해액수,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의 수 등으로 측정된 사건의 심각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Felson, Messner, Hskin, & Deane, 2002; Goudriann et al., 2004; Skogan, 1976, 1984; Zhang, Messner & Liu, 2007). 이와 함께, 피해사건의 유형 또한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대상 물품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나 보험금 신청 등 신고로 인한 편익이 높다는 점에서 신고율이 높아진다는 특성이 있었다(Skogan, 1984).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범죄신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발하는 등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인지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하기도 한다(Greenberg & Ruback, 1992). 또한, 사건발생 장소 또한 규범적 관점에서 경찰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의 신고에 앞서 직장 내 책임자나 상사, 선생님 등에게 먼저 보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Lynch, 198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경찰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연구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다.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비해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Block, 1974; Worrall & Peace, 1986; Braithwaite & Biles, 1980)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범죄사건의 신고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izotte, 1985; Skogan, 1984; BJS, 1980, 1992).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효과가 비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Kang과 Lynch(2014)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생애주기(life stages)에 따라 가해자와의 관계가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신고여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연령이 높은 피해자가 어린 피해자에 비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Baumer, 2002; Tarling & Morris, 2010; 탁종연·노성훈, 2009 등). 이 또한 규범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연령이 높은 사람들과 여성의 경우, 젊은 층이나 남성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따르도록 사회화되었다(Zink, Regan, Jacobson, & Pabst, 2003)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신념이 피해자로서 범죄사실을 경찰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고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포함된다. 경찰 신뢰도가 높을수록 피해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Goudriaan et al., 2004)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범죄신고로 기대되는 이익(가해자의 검거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피해복구의 가능성)을 크게 평가한 결과로 볼 수도 있고 경찰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범죄사건은 반드시 경찰에 인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연구(Tarling & Morris, 2010; 탁종연, 2010)에서는 경찰 신뢰도가 피해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피해사건 관련 특성에서 나아가 몇몇 선행연구들은 환경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취약성 등 지역수준 변수가 범죄신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반면(Baumer, 2002; Goudriaan, Wittebrood, and Nieuwbeerta, 2006), 이러한 지역수준 변수의 효과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건의 심각성을 통제된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도 있다(Bennett & Wiegand, 1994; Warner, 1992).

요약하면, 범죄피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지역수준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비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을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재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범죄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한국의 범죄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차용된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틀이 한국적 상황에서 얼마나 적실성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블랙의 법행동 이론은 범죄심각성 등 경찰신고 결정요인의 주요 요인들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에 주목하기로 하되, 실증적 선행연구에서 밝힌 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포함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을 폭행사건과 절도사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가진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차용된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틀이 한국범죄피해조사자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범죄피해자 신고결정요인을 설명하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폭행범죄와 절도범죄의 신고결정요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신체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경찰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둘째, 낮은 피해율로 인해 충분한 피해사건의 확보가 어려운 범죄피해조사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보완하는 한 방법으로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탐색해 본다.

## 2. 연구방법

###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분석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세 차례(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김지선·홍영오, 2011;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에 걸쳐 실시된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를 통합하여 활용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4년부터 3년주기로 실시되던 범죄피해조사는 2008년 범죄피해의 보고율을 높이고 각 피해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추가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면 개편작업을 거쳤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이를 통해, 2009년 조사(2008년 발생 범죄피해 기준)부터는 조사내용과 측정도구, 조사방법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였고 통계청의 조사승인을 받아 국가통계(승인번호 제 40301호)로서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을 목표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09년의 첫 번째 범죄피해조사 이후 2011년, 2013년 이어진 조사에서 일부 조사표의 내용과 범죄피해유형의 판별방식 등에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의 전체적인 틀 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차례 이루어진 범죄피해조사의 모집단은 ‘조사기준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으로 동일하고 표집틀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 조사구’로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2008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010년 범죄피해조사와 2012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집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편과 통계청의 승인 이후로 세 차례 실시된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발생빈도와 피해보고율을 고려하여 개인대상 폭행과

절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해당 범죄피해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단위로 구성하였다.

### (1) 폭행 판별식 비교와 분석대상 선정

자료의 통합을 위해 먼저 연도별 범죄피해조사 보고서(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김지선·홍영오, 2011;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에 나타난 범죄 유형 판별식을 비교하여 분석대상 범죄유형을 선정하였다.

폭행사건의 경우, 연도별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판별식의 조건식의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폭행이 있었을 것, 신체공격 내용이 성폭력 피해를 포함하지 않을 것, 신체피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탈취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을 것] 등의 네 가지 조건식을 만족하는 ‘상해 사건’과 ‘단순 폭행’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대체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2008년과 2010년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사용한 폭행 및 상해의 범죄판별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될 만큼 유사하였다. 2012년 조사 판별식은 ‘상해’와 ‘단순폭행’을 각각 ‘상해 폭행’과 ‘무상해 폭행’으로 구분하여 판별식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폭행의 신체공격 없이 협박만 이루어진 사건을 무상해 폭행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상해폭행’ 사건과 ‘무상해 폭행 + 단순협박’으로 판별식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8년과 2010년은 ‘폭행’과 ‘상해’사건, 그리고 2012년은 ‘상해폭행’과 ‘단순협박을 제외한 무상해 폭행’ 사건을 통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즉, 강도 및 성폭력 범죄, 그리고 폭행이 없는 단순협박사건을 제외하고 개인에게 신체공격 또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만을 폭행 및 상해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판별식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2008년과 2010년, 2012년 각각 43건, 40건, 22건으로 구성된 전체 105건의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 (2) 절도 판별식 비교와 분석대상 선정

앞의 폭행피해와 같은 방식으로 절도피해 사건의 연도별 판별식을 비교하였다. 먼저, 2008년 조사의 ‘개인절도’ 판별식은 [침입 없음, 몰래 가져감, 탈취피해 있음]

또는 [발생지역 잘 모름, 몰래 가져감, 탈취피해 있음]으로 구성되어 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하고 가해자가 몰래 가져간 탈취피해 사건을 일반절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범죄피해조사에서도 2008년과 유사하게 [몰래 가져감, 탈취피해 있음]을 일반절도의 판별식으로 구성하고 주거침입 절도는 제외하였다. 2012년의 일반절도 판별식은 주거침입절도에도 해당되지 않고 소매치기절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절도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소매치기의 경우, 2012년에는 별도의 판별식 [발생장소가 주거지 아닐 것, 신체 공격이나 협박 없음, 접촉탈취 있음]으로 구성되었다. 즉, 소매치기의 경우에는 2008년과 2010년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일반절도에 포함되나 2012년 조사에서는 일반절도에 포함되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자동차 절도의 경우, 2008년 피해조사에서는 개인대상 절도범죄피해로, 2010년 조사에서는 가구대상 범죄유형으로, 그리고 2012년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일반절도로 분류된 특성이 있어, 연도별 차이가 있었다. 자동차를 가구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가구 범죄피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피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절도의 범위에서 자동차 절도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고, 같은 이유로 자동차 부품절도를 제외하였다. 또한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 가구의 범죄피해로 이해하여 분석단위를 피해가구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피해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인 절도사건에서 제외하였다.

요약하면, 2008년과 2010년, 2012년의 절도사건을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2008년의 일반절도 사건 가운데 자동차부품 절도를 제외한 일반절도, 2010년의 일반절도 사건 가운데 자동차부품 절도를 제외한 사건, 그리고 2012년의 자동차(부품)절도를 제외한 일반절도와 소매치기 절도를 포함하여 절도의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부품)절도는 제외하되 소매치기는 포함하는 보다 일관된 형태로 일반절도의 분석대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2008년과 2010년, 2012년 각각 294건, 270건, 170건의 절도사건을 포함하는 전체 734건의 절도피해사건으로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 2) 주요변인과 자료분석 방법

판별식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구성된 폭행 105건과 절도 734건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로, 피해자 본인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변수값=1)와 그렇지 않은 경우(변수값=0)으로 나뉜 이분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폭행피해 105건 가운데 34건(32%)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절도피해 734건 가운데 92건(12.5%)만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폭행피해의 신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찰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독립변수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정도의 심각성이다. 먼저, 폭행사건에서 범죄 심각성은 가해자가 칼 등의 무기나 위험물건을 사용하였는지, 2인 이상의 가해자에 의한 사건인지 여부의 두 가지로 측정되었고, 피해 심각성은 상해가 발생하거나 심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폭행사건의 사건 심각성을 살펴보면, 무기사용 비율은 23%이었고 가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19%이며 피해 심각성은 심한 폭행인 경우가 54%로 나타났다. 절도의 경우에는, 피해 심각성을 피해액으로 측정하였다. 피해액은 3천원부터 1,400만원까지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평균 피해액은 30만 6,200원이었다. 피해액의 분포의 왜도값이 너무 높아 분석에서는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해당 사건의 경찰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대한 규범적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친척이나 가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이항분포로 구성하였는데 폭행사건의 51%가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었다. 이와 함께 규범적 관념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행연구에서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관련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폭행과 절도 각각 50%와 53%가 여성피해자였으며,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의 경우 폭행사건의 39%와 절도의 55%에서 피해자가 기혼자였으며, 폭행과 절도 각각 38%, 37%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평가를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라는 5점 척도 문항에 대한 응답 가운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응답을 검거신뢰도=1로 코딩하고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0으로 코딩하여 비교적 강한 검거신뢰를 보이는 경우를 구분하는 이분항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피해사건 신고로 발생하는 이익이 높다고 평가하여 신고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변수		최소-최대	폭행	절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고여부	신고 안함=0 신고 함=1	0-1	.32 (.47)	.13 (.33)
성별	남성=0 여성=1	0-1	.50 (.50)	.53 (.50)
연령대	10 대=1 ~ 60대 이상 =6	1-6	3.09 (1.63)	3.08 (1.56)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0-1	.39 (.49)	.55 (.50)
교육수준	대학교육 무경험=0 대학교육 경험=1	0-1	.38 (.49)	.37 (.48)
가구 소득수준	월 100만원 미만=1 ~ 월 1000만원 이상=6	1-6	3.15 (1.43)	3.31 (1.20)
무기·위험물건 사용	무기 사용 없음=0 무기 사용함=1	0-1	.23 (.42)	-
가해자 2인 이상	단독/모르겠음=0 2인 이상=1	0-1	.19 (.39)	-
이는 가해자	모르는 사람/모르겠음=0 이는 사람=1	0-1	.51 (.50)	-
심한 폭행	심한 폭행 아님=0 심한 폭행, 상해=1	0-1	.54 (.50)	-
피해액	단위: 만원	.30-1400	-	30.62 (81.25)
발생장소	집=1 주택가=2 학교/직장=3 기타=4	1-4	-	1=15.2% 2=23.7% 3=28.1% 4=33.0%
검거 신뢰	검거신뢰 높음=1 낮음/보통=0	0-1	.20 (.40)	.18 (.38)
계 (건)			105 건	734 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폭행과 절도 각각에 대해 종속변수인 신고여부와 각 결정요인들 간의 이변량 관계를 검증하였다. 폭행의 경우, 혼인상태와 심한폭행, 그리고 가해자 2인 이상의 변수들이 범죄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절도의 경우, 연령대와 혼인상태, 발생장소, 피해액이 범죄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일반 회귀모형으로 살펴본 결과 다중공산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생략).

## IV. 연구결과

### 1. 폭행 범죄피해 신고결정요인

폭행 및 상해사건의 범죄피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먼저 분석모델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건 심각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가운데 가해자 수만이 경찰신고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명확하게 2인 이상인 폭행사건은, 단독 가해자 및 가해자의 수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신고확률이 5.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 심각성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 즉 가해자의 무기 사용 여부와 상해 발생여부로 측정한 피해 심각성은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폭행의 경찰신고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에 대한 검거신뢰, 성별, 연령, 가구소득과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기혼자들은 미혼자 및 사별, 이혼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피해신고 확률이 약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한 자료가 3차년도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조사자료의 년도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조사년도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폭행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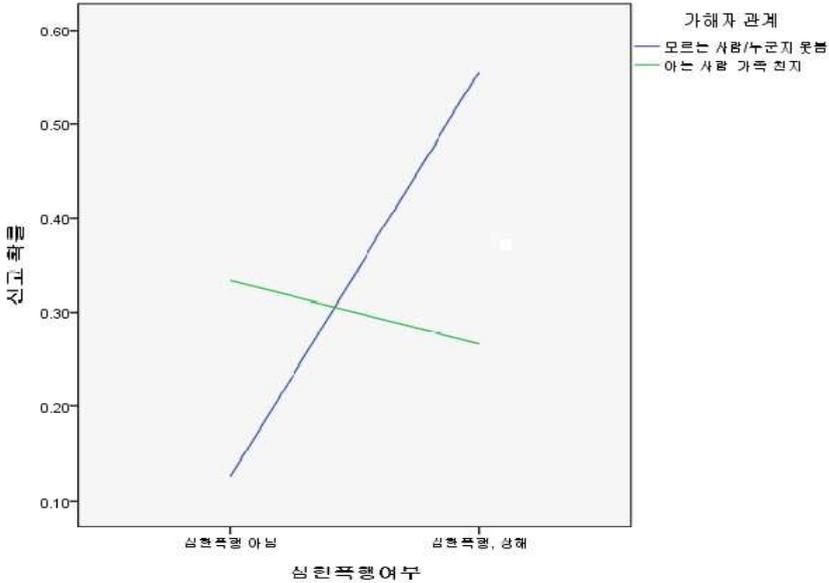
	분석 모델 1		분석 모델 2	
	b(s.e.)	Exp.(b)	b(s.e.)	Exp.(b)
성별 (여성)	.277 (.489)	1.320	.230 (.535)	1.258
연령대	-.158 (.235)	.854	-.293 (.263)	.746
혼인상태 (기혼)	1.543 (.733)	4.677*	1.708 (.802)	5.517*
가구소득	.031 (.187)	1.031	.038 (.206)	1.038
대학교육 경험	.439 (.535)	1.551	.352 (.593)	1.422
무기사용	.695 (.581)	2.003	.918 (.970)	2.504
심한폭행	.696 (.503)	2.006	1.696 (.934)	5.452
아는 가해자	.005 (.494)	1.006	1.623 (.846)	5.067
가해자 2인 이상	1.677 (.641)	5.350**	-.311 (1.314)	.733
검거 실패	-.908 (.681)	.403	-.905 (.732)	.405
년도구분(2010)	.394 (.582)	1.483	.416 (.633)	1.516
년도구분(2012)	.515 (.687)	1.674	.335 (.771)	1.398
interaction				
심한폭행×아는 가해자	-	-	-2.468 (1.132)	.085*
심한폭행×무기사용	-	-	-.322 (1.265)	.724
심한폭행×가해자 2인 이상	-	-	2.758 (1.676)	15.770
상수항	-4.786 (1.578)	.008**	-5.077 (1.671)	.006**
chi-square	21.821*		32.205 **	
-2Log 우도	110.418		100.033	
Nagelkerke R 제곱	.262		.369	

\*\*\* p < 0.001, \*\* p < 0.01, \*p < 0.05

<표 2>의 분석 모델 1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검증된 사건 심각성이 피해신고에 유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피해 심각성과 피해자-가해자 관계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등이 범죄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해자의 관계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피해 심각성이나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Kang & Lynch, 2014). 이를 고려하여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피해 심각성의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하는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는데 피해 심각성이 범죄 심각성(가해자 2인 이상 여부와 아는 가해자 여부)과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지도 살펴보았다(표2의 분석모델 2). 분석 결과, 피해 심각성은 피해자-가해자 관계변수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으나 사건 심각성과는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해자 관계 변수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신고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피해 심각성이 피해사실 신고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르는 사람에 의한 심한 피해는 피해자의 경찰신고 확률을 높이는 반면,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고). 이처럼 아는 사람에 의한 심한 폭행피해를 오히려 덜 신고하는 것은 신고 이후의 가해자와의 관계변화에 대한 우려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이전에 가해자와의 합의나 보상, 화해나 가해자의 사과, 지인들의 중재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사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폭행피해의 신고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피-가해자 관계와 피해 심각성이 갖는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피해자의 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분석모형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폭행 심각성 정도별 피-가해자 관계의 신고 예측확률



## 2. 절도 범죄피해 신고결정요인

절도사건의 범죄피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3의 분석모델 1)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연령대와 피해액, 그리고 발생장소가 유의하게 피해자의 경찰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절도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확률이 높았고, 피해액(로그화된 값)이 클수록 절도사건의 신고확률 또한 높아졌다. 발생장소는 집, 주택가, 학교 및 직장,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신고확률이 기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교하여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액으로 측정된 피해 심각성이 클수록 피해자의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쳐 신고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연령대에 따른 규범적 관념의 차이가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끼리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거나, 절도사건피해를 분실

로 오인하는 경우를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절도를 분석에서 배제하였는데, 발생장소가 집인 절도사건은 주거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에 의한 절도로 이해될 수 있어 절도의 범인이 아는 사람인 경우 혹은 가족 구성원의 동의 하에 집에 출입한 사람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특성이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신고확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범죄피해조사는 14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이 경험한 절도피해 사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연령은 규범적 관념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점, 주로 만나는 대상이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사건이 성인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0대를 제외하고 성인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건만을 다시 재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3의 분석모델 2와 같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이 10대인 사건을 제외하고 성인 피해사건만을 분석하여 전체 연령대를 포함한 분석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다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된 피해사건 수가 많아 가능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인 피해자만을 분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대와 피해액, 그리고 발생장소가 유의하게 피해자의 경찰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연령대를 포함한 분석(표 3의 모델1)과 차이가 없었다. 즉, 성인 피해사건의 경우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액이 클수록 해당 절도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확률이 높아졌고,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기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비해 경찰신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10대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인의 피해사건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찰의 검거신뢰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경찰에 대한 검거신뢰가 높은 경우 오히려 절도사건의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찰에 대한 검거신뢰가 높을수록 절도의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절도의 발생장소가 집(15.2%)이나 학교/직장(28.1%)인 경우가 전체 절도사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절도사건의 상당수가 가구에 출입이 허락된 사람에 의해 집에서 발생하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경찰에 대한 검거신뢰가 높을수록 절도사건의 신고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은, 절도사건의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아닌 절도피해 사건 혹은 절도 의심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절도사건의 가해자 혹은 가해자로 의심가는 사람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표 3〉 절도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모델 1: 전체연령대를 포함한 모델 (734건)		모델2: 10대 제외, 성인 피해자만을 포함한 모델 (566건)	
	b (s.e.)	Exp.(b)	b (s.e.)	Exp.(b)
성별 (여성)	.273 (.281)	1,314	.295 (.301)	1,343
연령대	.302 (.127)	1,353*	.319 (.144)	1,376*
혼인상태	.159 (.372)	1,172	.185 (.388)	1,203
가구소득	.004 (.121)	1,004	-.022 (.129)	.978
대학교육	.402 (.301)	1,495	.473 (.341)	1,606
피해액 logged	2,475 (.320)	11,887***	2,302 (.321)	9,992***
발생지: 집 <sup>a</sup>	-1,499 (.557)	.223***	-1,429 (.555)	.240*
발생지:주택가	.127 (.339)	1,135	.116 (.344)	1,124
발생지:학교/직장	.432 (.386)	1,541	.754 (.411)	2,125
검거 신뢰	-.662 (.390)	.516	-.899 (.422)	.407*
년도구분 (2010)	.111 (.342)	1,118	-.081 (.356)	.922
년도구분 (2012)	.140 (.342)	1,150	.043 (.349)	1,044
상수항	-6.634 (.832)	.001	-6,346 (.939)	.002
chi-square	127,275***		98,425***	
-2 Log 우도	358,598		325,746	
Nagelkerke R 제곱	.339		.313	

\*\*\* p < 0.001, \*\* p < 0.01, \*p < 0.05, <sup>a</sup>발생장소(기타) 참조범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절도사건의 피해 혹은 피해의심은 높더라도 가해자의 처벌 및 신고의지는 약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여 후행 분석을 통해 절도사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V. 결론

이 연구는 개인의 폭행과 절도피해의 신고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한국범죄피해조사의 낮은 피해율을 고려하여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를 통합하여 분석해보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2인 이상인 사건으로 측정한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혼인상태만이 유의하게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해발생 여부로 측정한 피해의 심각성은 그 자체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사건에서 피해의 심각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심한 피해는 피해자의 경찰신고 확률을 높이는 반면,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액수로 측정된 피해의 심각성과 발생장소, 피해자의 연령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액이 커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고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신고가능성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사건의 신고여부 결정요인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심각성은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범죄피해조사의 폭행사건과 절도사건 신고요인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심각한 사건과 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신고로 인해 기대되는 이득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일수록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나 믿음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규범적 틀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한국범죄피해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은 선행연구결과들과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성별의 유의한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도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Baumer, 2010; Gourdriann et al., 2004 등). 그러나, 한국범죄피해조사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고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령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Baumer, 2002; Tarling & Morris, 2010; 탁종연·노성훈, 2009 등)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과 중장년층이 남성이나 젊은 층에 비해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잘 따르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이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규범적 관점(Zink, Regan, Jacobson, & Pabst, 2003)을 고려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보다 신고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탁종연·노성훈, 2009)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규범적 관념의 차이 때문인지 혹은 범죄유형에 따른 차이인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후행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범죄유형에 따라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절도와 폭력의 두 범죄유형 모두에서 사건 심각성과 피해 심각성이 신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 그러나, 절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대와 발생장소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력의 경우에는 기혼자의 신고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범죄유형별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절도의 경우에는 연령과 사적 공간인 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규범적 관념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폭행의 경우 배우자가 신고여부의 의사결정에 조연이나 권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폭행사건의 신고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가해자 관계 변수는 독립적으로 분석모델에 넣었을 때와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결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을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피해

의 심각성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피해심각성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교차상호작용을 통해 신고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신고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피해의 심각성이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갖는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폭행사건과 절도사건의 신고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선행연구의 이론적 틀을 적용해 보는 것과 함께 피해조사자료의 통합적 활용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고 나타난 피해 심각성 혹은 사건 심각성은 폭행과 절도의 두 범죄유형 모두에서 그 영향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도사건에서 피해액이 커질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아졌고, 폭행사건에서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심각한 사건인 경우에 신고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범죄유형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절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대와 발생장소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력의 경우에는 기혼자의 신고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 이처럼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연구방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년간의 자료를 통합하여도 여전히 낮은 피해율로 인해 분석을 위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분석모델이 피해신고 결정요인의 주요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해 그 완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폭행사건에서의 다수 피해자를 포함하는 심각한 피해사건인지, 가해자 이외에 동조자가 있었는지, 절도사건에서의 피해품은 무엇이었는지, 가해자가 가족이나 아는 사람인지 등 사건 심각성과 피해 심각성을 보다 정교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행 연구에서 사건 심각성과 피해 심각성 및 피해자-가해자 관계, 발생장소 등 주요변수를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환경변수를 포함하여 보다 섬세하게 분석모형을 재분석해보는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훈 (2012). 이민지위와 범죄심각성이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89:285-317.
- 탁종연·노성훈 (2009). 인종이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41-70.
- 탁종연 (2010). 피해신고율 결정 요인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3:53-75.

### <국외문헌>

- Baumer, E. P. (2002).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40, 579-616.
- Baumer, E. & Lauritsen, J. (2010).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1973-2005: a Multivariate analysis of long-term trends in the national crime survey (NCS) and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NCVS). *Criminology*, 48, 131-185.
- Bennett, R. R. & Wiegand, R. B. (1994). Observations on crime reporting in a developing nation. *Criminology*, 32, 135-148.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lock, R. (1974). Why notify the police? The victim's decision to notify the police of an assault. *Criminology*, 11, 555-569.
- Braithwaite, J., & Biles, D. (1980). Empirical verification and Black's *The*

- behavior of la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334-338.*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1980). *Intimate Victims: A study of Violence among Friends and Relativ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1992).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elson, R. B., Messner, S. F., Hoskin, A. W., & Deane, G. (2002). Reasons for reporting and not reporting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Criminology, 40*(3), 617-647.
- Gottfredson, M. R. & Hindelang, M. J. (1979). A study of the behavior of la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3-18.*
- Goudriaan, H., Lynch, J. P., & Nieuwbeerta, P. (2004). Reporting to the police in Western n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Justice Quarterly, 21*(4), 933-969.
- Greenberg, M. S., & Ruback, R. B. (1992). *After the crime: Victim decision making*. New York: Plenum.
- Hembroff, L. A. (1987). The seriousness of acts and social contexts: a test of Black's theory of the behavior of law.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322-347.*
- Kang, J. Lynch, J. P. (2014). Calling the police in instances of family violence: Effects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life stages. *Crime and Delinquency, 60*(1), 34-59.
- Lizotte, A. (1985). The Uniqueness of Rape: Reporting Assaultive Violence to the Police. *Crime and Delinquency, 31, 169-190.*
- Lynch, J. P. (1987). Routine Activity and Victimization at Wor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 283-300.*
- Skogan, W. G. (1976). Citizen reporting of crime: Some national panel data. *Criminology, 13, 535-549.*

- Skogan, W. (1984).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113-137.
- Tarling, R., & Morris, K. (2010).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0, 474-490.
- Warner, B. D. (1992). *The reporting of crime: A missing link in conflict theory*. In Social Threat and Social Control, ed. Allen E. Lisk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orrall, A., & Pease, K. (1986). Personal crimes against women: Evidence from the 1982 British Crime Survey. *Howard Journal*, 25, 118-124.
- Zhang, L., Messner, S. F., Liu, J. (2007). An exploration of the determinants of crime reporting to the police in the city of Tianjin, China. *Criminology*, 45(4), 959-984.
- Zink, T., Regan, S., Jacobson, C. J., & Pabst, S. (2003). Cohort, period, and aging effects: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women's reasons for remaining in abusive relationships. *Violence Against Women*, 9, 1429-1441.

Reporting theft and assault victimization to the Police:  
KCVS 2008-2012

Kang Jihyon\*

This study examines the willingness of victims to call police to report their theft and assault victimization. Drawing upon cost-benefit analysis and normative prescription on victims' decision to call police and the empirical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incident-relevant factors and socio-demographic features of victims are examined. Incident-level data were merged from 2008-2012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for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decisions to report an incident of assault are heavily dependent on the seriousness of incident and marital status of victim. In addition, there was significant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seriousness of injury. Victims' decisions to report theft to the police are influence by seriousness of crime, the place where theft occurs, and the age of victim.

❖ Keyword: reporting to the police,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assaults, thefts

투고일 : 5월 30일 / 심사일 : 6월 19일 / 게재확정일: 6월 30일

---

\*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School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Ulsan